

수신: 민족연합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발신: 재독양심수후원회(독일: 0274513400)

등록일	문서번호	서류번호
08 3-6	A	173

김영식대통령께 드리는 글 (법무부장관, 노동부장관)

우리는 1960년 중반부터 70년 중반에 걸쳐 취업을 위해 하일병으로 건너온 교민들입니다. 오랫동안 낯선 이국땅에서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온 우리들은 한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사회의 발전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는 얼마전부터 국내의 노동시장에 산업현수생이라는 명목으로 동남아 가난한 나라들의 노동인력이 도입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였으며,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의 고국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얼마전부터 속출되는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탄압 소식들은 할한이니마 한국의 발전상에 대해 가졌던 자부심을 차마 얼굴을 들 수 조차 없을 정도의 수치심으로 전환시키고 말았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출입국관리소는 지난 6월2일 보라매 공원에서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던 외국인노동자들을 강제 연행 하려다 주변시민들로부터 저지당하자 다음날인 6월3일 전경 5백여명을 출동시킨 가운데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에 난입하여 이곳에 와 있던 네팔인 노동자 부부와 김해성목사('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 소장,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상임대표)를 연행하여 갔습니다. 진압과정에서 김해성목사는 머리를 크게 다쳐 심한 구토와 두통증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현재까지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구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이에 항의하는 시민 김성만씨를 방패로 내리찍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으며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 사무국장인 양해우씨 까지 추가로 연행하는 등 무리하게 공권력을 남용하는 사태를 유발시켰습니다.

이러한 사태들은 강제노동, 외부 출입금지, 성희롱, 국내 최저 임금의 1/7에도 못미치는 저임금 등 신문을 뒤덮은 커다란 황자들, 그리고 "여권을 돌려주세요", "월급을 주세요", "때리지 마세요" 등 절규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외침과 함께 우리의 가슴을 도려내는 듯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 중진국으로 달바꿈하고 있는 현재의 한국에서 어떻게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악덕 기업주의 횡포와 죄악의 노동조건을 견디지 못해 이탈한 현재 15만에 달하는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정부는 '불법체류에 대한 특별적인 단속'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국인노동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이것뿐이라는 것에 실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우기 타자에서 소외당하고 오갈대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살 공간을 만들어 주고, 이를에게 합법적인 취업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 혼신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와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에 대한 탄압을 한국정부는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또한 외노집 대표 김해성 목사와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사무국장 양해우씨를 즉각 석방해야 합니다.

이을려 우리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사면과 '외국인 노동자보호법' 제정 및 '산업기술연수생 제도'의 협약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현재 독일 내에는 삼성, 현대, 대우 등의 대기업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비인간적 처사는 해외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의 이미지와 결코 분리되어 인식되지 않는 점을 한국정부는 명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관찰, 개선될 때 까지 우리는 계속 한국정부의 태도를 주시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차원의 개선 대책안이 빠른 시일안에 마련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국제여론을 통한하여 한국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전세계에 호소할 것입니다.

1996년 6월11일

재독한국여성모임 · 빠림노동교실 · 재독양심수후원회 · 한독문화협회 · 재독한국민족문화모임
재독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한인교회연합회도요기도회 · 코레아협의회(KOREA-VERBAND)

서독 및 원광 취업 관계 연구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번호
W5	A 3-6	1

634 資料篇

II. 海外就業關聯 主要法規

1. 西獨 및 越南就業關係

<西獨派遣 韓國礦夫 臨時雇傭計劃>

제 1 장

1. 「루르지방 산조합(Unternehmensverband Ruhrbergbau)」을 대표하는 독일연방공화국 석탄광업은 한국광부를 그의 직업상의 기술습득과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하작업에 종사할 근로자로서 3년간 취업시킬 용의가 있다.

2. 서독탄광에서 취업할 한국광부의 파견수는 한독 양정부의 합의에 의해서 정한다.

제 2 장

1. 한국정부는 광부선발에 있어서 그들의 직업, 건강, 정신, 또는 인격 등의 적격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그들은 다음 조건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가. 20세~35세인 자

나. 만 1년 이상 탄광 경내에서 종사한 자

다. 서독으로 항발하기 전 3년 중 휴직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

제 3 장

1. 선정된 후보자는 별첨 1에 의한 신체검사표에 의거 지하광부로서의 적합성을 판정받기 위하여 X광선 사본을 포함하는 특별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신체검사는 한국정부의 보건사회부 장관이 지정한 의사이어야 한다.

3. 한국정부는 동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 4 장

1. 한국정부는 본계획 제1장에 의하여 파견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명단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성명, 종교명, 생년월일, 가족관계, 자녀수 및 혼주소

나. 지하작업종목, 취업기간

2. 한국정부는 광부 파견의 후보자 명단을 주한 서독대사관을 경유하여 U.R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신체검사 결과표와 X광선 사진

② 전파명단에 등록이 없고 경범죄 이상의 범죄사실이 없다는 관청증명

3. 이 후보자 명단에는 독일측의 이외, 후보자의 사퇴, 출발시 지장에 의하여 만일의 경우에 있을 낙오를 신속히 보충하기 위하여 한국정부는 매집단 수송의 예정수를 약간 넘겨 그 후보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 5 장

U.R은 동명단에 기재된 광부채용의 결정을 가능한 한 광부 이한 3개월 전에 주한 서독 대사에게 통보한다.

海外就業關聯 主要法規 635

동시에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거주허가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송할 것이다.

그 확정된 한국광부는 한국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며 그 여권기간은 1년간 유효토록 하여야 한다.

주한 서독대사관은 동여권에 입국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여권의 효력을 계약기간, 즉 광부들이 서독탄광에서 작업하고 있는 기간 또는 귀국시까지 주독 한국대사관에 의해서 연장할 수 있다.

제 6 장

U.R. 한국광부의 서독까지의 항공편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각 항공회사의 을파(offer) 중에서 가장 유리한 것으로 한다.

제 7 장

1. 한국광부를 고용하는 서독탄광회사는 광부가 도착하자마자 즉시로 그 지방 등록사무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하며 3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소에 거주허가를 신청토록 하여야 하고 그 필요한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그 고용주는 한국광부가 도착한 명단을 뒤셀도르프(Düsseldorf)에 있는 도 노동청(Londonarbeits und Novdrkein-Ulestfaler)에 통보하여야 하며 도 노동청은 특정한 신청에 필요 없이 광부들에게 계약기간 동안 노동허가를 발급하여야 하고 고용주는 광부의 변동에 대하여 노동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장

1. U.R.에 의해서 고용되는 한국광부의 개개인은 한국어와 독일어로 된 고용계약서(별첨 II)에 서명하여야 한다. 동계약서는 먼저 고용주가 서명하고 한국을 출발하기 전에 주한 서독대사관을 통해서 광부에게 서명하도록 수교된다. 한국 광부와 서독 고용주가 본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계약의 효력을 발생한다.

2. 한국정부는 한국어와 독일어로 된 고용계약서를 인쇄하여야 한다.

제 9 장

한국광부의 고용은 그들이 작업장에 도착한 날부터 시작한다.

제 10 장

한국광부는 독일연방공화국에 입국하기 전에 한국어와 독일어로 된 다음 안내서를 받게 될 것이다. 생활조건, 서독의 노동조건, 봉급으로부터 공제하는 사망·사회보험의 부담금 또는 사회보장부담금 등이 기재된 안내서를 한글·한국어로 번역하여 주면 좋다.

1. 한국정부는 이 안내서를 한국어로 번역하여야 한다.

제 11 장

독일 광산종업원 규정에 의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독일어로 사용할 수 있고 충분히 이해하여 그의 상급자 또는 동료의 말을 반복할 수 있는 자에 한해서 지하작업에 허용된다. 한국광부가 독일어를 충분히 사용하기 전까지는 서독 도착 후 통상 6주일의 작업을 할 것이다. 동기간 중 한국광부는 무료로 서독광산회사로부터 독일어강습을 받게 될 것이다.

한국광부는 노동시간 중 이 강습에 출석함으로써 임금이 차감되지 않는다.

2. 이 독일어강습을 보강하기 위하여 한국정부는 광부의 출발 전 2개월간 독일어강습을 제공할 것이다.

3. 타인의 생명 및 건강에 관계되는 작업은 독일어를 충분히 말할 수 있고, 해득 및 쓸

수 있는 자에 한해서 허용된다.

제 12 장

독일규정에 의거 한국광부는 지하작업(작업량에 의해서 지불되는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일정한 훈련을 갖도록 계획되어 있다.

즉, (가) 1개월은 석탄 운반으로서 일하며 임금은 고정급으로 한다.

(나) 2개월은 지하작업(작업량에 의해서 지불되는 작업)의 훈련을 받는다.

제 13 장

1. 국적에 관계 없이 서독탄광에서 작업하는 한국광부는 임금, 노동조건 및 노동보호 등에 있어서 서독 노동자와 동등하게 취급될 것이다.

2. 사회보험 중 가족수당과 외국에 체류하는 불양가족에 대한 법적인 아동보조는 독일법률에 따라서 청구될 수 없다.

3. 한국광부는 서독법률에 의거 그들의 인체 또는 재산에 대해서 독일시민과 동등한 법적 보호를 받는다.

제 14 장

(1) 한국광부는 사회보험의 모든 분야를 포함해서 독일노동자와 같은 보장을 받는다. 단 광부노동조합연금제도에 관한 제15장은 해당치 않는다.

(2) 건강보험에 대한 기여금은 고용주와 피고용주가 반반씩 부담한다. 고용주의 기여금 부담액은 봉급 중에서 공제되어 고용주에 의하여 건강보험료로 이송된다.

(3) 사고보험에 대한 프리미엄은 고용주측에서만 부담한다. 사고보험은 작업중의 사고와 작업장에 왕복시 발생하는 사고를 포함해서 작업에 관련된 병환 등을 카버한다.

(4) 실업보험은 불입할 필요가 없으나 실업에 대한 보험은 독일광부의 경우와 같이 한국인 광부에게 적용된다.

(2) 한국은 국제노동기구(ILO)의 회원국이 아니므로 작업중 사고 및 직업병 보상에 관한 본국인 및 외국인에 대한 동등취급을 규제한 조약 제19호는 적용할 수 없으며 오직 서독국내법만이 작업중 한국인 광부의 사고 및 직업병에 대한 보상에 적용된다.

제 15 장

(1) 1957년 5월 21일부 탄광노동조합 연금보험 신규제에 관한 법률 제32장 제 6 절(BCBI 633면)에 의거해서 고용자 피고용자에 의해서 제출되어야 할 특별신청에 따라서 한국광부는 탄광조합 연금보험법에서 면제된다. 그리하여 보유된 금액은 고용주에 의하여 U.R. 감독하의 특별회계로 이송된다. 이 특별회계에서 제16장 및 제20장 3항에 기입된 비용에 충당된다.

(2) 특별회계의 관리 및 감사를 통제하기 위하여 한국 및 서독 양측으로부터 각각 3인으로 구성된 감독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며 동위원회는 최소한 연 1회 회합해서 동특별회계 내용을 보고하며 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불의의 지불금에 대한 결정을 한다.

동 위원회의 인적 구성 및 운영방법은 본 주제 한국대사관에 의해서 준비된다.

(3) 한국정부는 본체의 종료 후 모든 개개 광부들의 특별회계 총액에서 남은 기여금에 관하여 통보한다. 이 기여금은 한국광부가 독일에서의 취업기간 중 동광부가 마치 한국에서 같은 기간을 같은 일에 취업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회적으로 유리하게 한국광부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만일 이것이 한국법률에 의하여 불가능하면 이는 개개 광부에게 귀속되며 한국정부에 의하여 지불될 것이다.

(4) 위원회는 2항에 의한 특별회계의 최종처분을 결정한다.

이는 본계획의 종료 후 시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시행된 후에는 동기금에 대한 어느 청구도 무효가 된다.

(5) 2항에 의한 위원회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6 장

한국광부의 왕복여비는 제15장에 언급된 특별기금으로부터 염출될 것이다. 한국으로부터 서독까지의 여비는 서독 고용자가 선불한다.

단, 이 선불액은 후에 15장에 의하여 특별회계에 불입된 기여금으로 충당한다.

제 17 장

서독탄광회사는 한국광부에게 그들 도착일에 그들이 첫 차금을 받을 때까지 필수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될 수 있게끔 선불하여야 하며 동 선불액은 후에 월급에서 분할공제하여야 한다.

제 18 장

(1) 고용주는 한국광부가 도착하면 침식을 제공할 것이며 독일인과 동등한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식사에 있어서 최대한으로 한국식 편의를 제공할 것이다.

(2) 독일인과의 생활에 익숙하여진 후에 한국광부가 동 생활을 원한다면 서독탄광회사는 그와 같은 생활을 가능케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제 19 장

법정 외환규칙에 따라서 한국광부는 그들의 봉급 잔액을 본국에 송금할 수 있으며 보험금 또는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

제 20 장

(1) 한국정부는 한국광부의 고용 완료 후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다. 이때 서독측은 그들이 필요하다면 한국에 필요한 여행증을 발급한다.

(2) 제1장에 의거 계약 만료 전 한국광부의 유착사유로 인하여 귀국할 때 그 여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15장에 의하여 특별회계에 예치된 그의 기여금에서 동인에게 지불코 잔액이 있으면 동인에게 귀속한다.

만일, 실지 귀국여비가 광부의 기여금을 초과할 시에는 이 초과액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책임을 진다. 이상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한국광부는 15장 3절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여비를 청구할 수 없다.

(3) 특별히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의 귀국여비는 15장 2절이 정하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15장 1절이 정한 특별회계에서 지불할 수 있다.

제 21 장

(1) 한국정부는 연락관을 파견할 수 있다.

서독탄광회사는 피고용인이 한국광부 중에서 1명의 유자격 광부를 연락관으로 임명할 것이다. 연락관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작업이 면제될 것이다.

(2) 연락관의 역할은 주로 한국광부와 회사간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며, 그 외에도 기술적 감독 또는 훈련 등에 종사한다.

연락관은 또한 광부의 사회적 또는 개인적인 사항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문화적 생활에

638 資料篇

도 참여하여야 한다.

또한 연락관은 탄광회사와 광부 사이에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韓國礦夫 履僱契約書>

고용주

광구장소

광업회사

광부성명

생년월일

배우자관계, 미혼 기혼 사별

(해당사항 이외의 것을 삭제할 것)

고용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S 1

고용주는 광부가 취업장소에 도착한 날부터 3년간 일까지 광업소에서 지하작업에 종사할 노동자로 취업시킬 의무가 있다.

광부는 지하작업의 본래의 작업과정에 익숙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이다.

광부는 계약기간 중 고용주로부터 상기활동에 대하여 이행할 의무를 진다.

광부임금, 노동조건 등에 있어서 국적에 관계없이 서독광부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S 2

고용계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지역내 광산의 석탄광업 관계 노동계약 규칙이 유효하나 만일 동규칙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신규칙에 따른다.

※ 임금·봉급, 노동조건은 별도 소책자로 노동자에게 배부될 것이다.

S 3

노동시간은 그 지방 탄광규칙에 따른다. 현재 지하작업 통상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포함해서 1일 8시간, 1주 5일간이며, 저상 노동시간은 30분간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 45분이다.

S 4

광부가 서독에 도착하는 즉시로 서독탄광회사는 그들을 그 지방 등록사무실에 등록케 한다. 도착 후 3일 이내에 즉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S 5

지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광부는 어학시험을 통해서 독일어를 충분히 이해(듣는 것과 말하는 것)한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 어학시험에 통과하기 전 통상 6주간은 저상작업을 하게 된다. 이 기간 중 광부는 어학 강습소에 다녀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어학강습소는 고용주에 대해서 경영되며 한국광부에게는 무료로 제공된다. 동 어학강습소에 다님으로써 임금에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

S 6

체탄작업을 하기 위한 지하작업은 지하작업장에서 훈련을 받게 되며 동 훈련은 보통 3개 월간 계속된다.

S 7

① 고용주는 광부에게 노동청으로부터 적당하다고 인정된 숙소를 이용하도록 한다. 숙소로서는 독방 또는 최고로 침대로 된 방이 준비되어 있다. 숙소(숙비)에 관해서는 광부가 매월 1, 매주 1, 매일 ※로 DM를 지불하여야 한다.

② 고용주는 광부에게 아침 1, 점심 1, 저녁으로 적당한 급식을 허락한다.

급식에 관해서는 광부가 매일 1, 매주 1, 매월 ※로 DM를 지불하여야 한다.

③ 노동자는 아침 1, 점심 1, 저녁 ※을 실비로써 급식제공을 받을 수 있다.

④ 구입가능은 경영자 주보에서 할 수 있다.

※ 해당사항 이외의 것은 삭제할 것.

S 8

고용주는 광부가 광산에 도착한 날부터 첫 봉급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들에게 DM의 현금을 선불한다. 후일 이 선불액은 봉급 중에서 매월 DM의 분할 공제로 한다.

S 9

광부는 서독광산 휴가규칙에 따라서 유급 휴가를 갖는다.

S 10

한국광부의 여비는 고용주로부터 선불 형식으로 지불된다.

고용주와 광부는 공동신청으로 광부조합의 연금보험료의 면제를 하도록 한다.

동 신청의 결과 보험료가 면제될 경우에는 연금보험에 대한 할당액은 고용주에 대해서 특별 회계로 전입된다.

대서독 노동력 출가계획에 의하여 부터 서독광산에서 취업하는 한국광부를 위한 고용주와 광부의 상기 할당액은 특별회계로 전입된다.

U.R.은 이 기금으로부터 모든 광부의 왕복여비를 염출한다. 또한 본 계획에 고용된 모든 한국광부를 위해서 본 특별기금에도 한국정부로 이송되어 한국광부의 복리를 위하여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 고용주와 광부는 U.R.에게 상기 특별회계를 상기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위촉한다.

또한 고용주와 광부는 한독 쟁방의 대표자, 즉 한국정부 및 고용주 대표자로 구성되는 위원회에게 동특별회계를 감독할 권한을 부여하며 불가피한 지출과 회계의 사용을 결정하고 계약이 끝난 후 이 기금을 청구할 권한을 위임한다.

S 11

만약에 고용계약이 광부측 사정으로 계약만료일보다 조기에 해약되는 경우에 귀국여비는 광부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광부는 10절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의 개인기여금만을 받을 수 있다.

S 12

고용계약에 의해서 규정된 고용조건은 서독법에 따른다. 광부의 권리 주장은 고용주에게만 할 수 있고, 그의 직접 상급자인 탄광회사의 권리위촉인에게는 할 수 없다.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계의는 서독노동재판소에서 판할한다.

년 월 일

고용주 서명